

제420회 임시회
운영상황결과보고

(2025. 7. 15. ~ 7. 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제 420회 임시회

(2025. 7. 15. ~ 7. 25.)

제420회 임시회 개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출범 2년 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는 국가적 혼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시대적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이재명 정부 출범까지 중앙정치의 격랑 속에서도 단체장은 단체장의 일을, 지방의원은 지방의원의 소임을 충실히 할 때 지역사회가 굳건히 지탱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흔들림 없이 걸어왔습니다.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내건 후반기 도의회는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의회의 위상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도의회 존재 이유는 오직 도민 행복과 전북 도약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개발 등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대표성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광역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지도부와의 만남, 건의안 채택, 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 왔습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현실 속에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연합회와 연대해 지자체 추경 제도개선 등 지방자치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은 1년 도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집행부와 함께 더욱 치열하게 일하겠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김관영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7월 1일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도는 물론 시·군 단체장들이

지난 성과를 발표하며 남은 1년의 비전과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는 1년, 실질적인 결실을 거두고 도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지키지 못한 도민과의 약속을 자세히 살피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전북은 아직 청년유출, 인구감소, 새만금, 탄소·수소산업의 구체적 실행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 전북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형식이 아닌 실질로 민선8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간 강조했습니다만 민생경제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민생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습니다.

차질 없는 준비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집행으로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그리고 도민의 생활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북교육은 최근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로 다시 행정 공백기를 맞으며

교육감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렇다고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부모가 학력신장을, 교직원이 교육활동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현실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정치보다 길고 사람보다 오래가는 공공의 가치입니다.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전북교육청이 정책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현장의 신뢰회복을 통해 전북교육이 다시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영 지사님과 유정기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최하는 제420회 임시회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도청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은 백년대계를 다지는 자세로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시선에서 냉철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전북의 미래와 도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진심을 담아 협력하고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걸음이 전북을 더 나은 내일로 이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 승 우

목 차

제420회 임시회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7
2. 회기 및 운영	7
3. 의 사 일 정	8

II.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15
2. 처 리 현 황	16

III.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 수 현 황	81
2. 처 리 현 황	81
3. 위원회별 처리현황	82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25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83
2. 2025년 위원회별 요구상황	83
3. 제12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	84
4.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	84

I. 집회 및 의사일정

1. 공고 및 집회

- 집회 공고 : 2025. 7. 8.(화)
- 집회 일자 : 2025. 7. 15.(화) 14:00
- 집회 사유
 - 2025년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 청취
 - 조례안 및 계류의안 등 안건 심의
 - 상임위원회별 활동

2. 회기 및 운영(제12대 후반기)

- 회 기 : 2025. 7. 15. ~ 7. 25.(11일간, 2025년 : 64일, 총누계 398일)
- 개의일수
 - 본회의 : 3일(연 누계 : 15, 총 누계 85)
 - 상임·특별위원회

구 분	계	의회운영	기획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 육	특 별
제420회 임사회	21	1	4	5	4	4	4	0
2025 년도	95	5	16	19	15	19	14	7
총 누 계	202	12	36	37	33	37	32	15

3. 의사일정

○ 본회의

일시	부 의 안 건	비 고
7.15.(화) 14:00	《 제1차 본회의 》 ○ 개 회 식 ○ 간부소개 ○ 5분 자유발언(9명) - 장연국 의원, 박정희 의원, 최형열 의원, 오현숙 의원, 김이재 의원, 김성수 의원, 이병철 의원, 이수진 의원, 권요안 의원	
7. 18(금) 13:40	《 제2차 본회의 》 1.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7. 25(금) 10:00	《 제3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10명) - 전용태 의원, 한정수 의원, 임승식 의원, 김동구 의원, 박정규 의원, 윤수봉 의원, 김슬지 의원, 오은미 의원, 임종명 의원, 이명연 의원 1. 긴급현안질문의 건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의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p>13.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p> <p>14.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15.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p> <p>16.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p> <p>17.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p> <p>18.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19.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p> <p>20.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21.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p> <p>22.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p> <p>23.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24.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25.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p> <p>26.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안</p> <p>27.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28.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29.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p> <p>3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p> <p>3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p> <p>3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p> <p>3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p> <p>3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p> <p>3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p> <p>3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p> <p>3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p> <p>38.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 <p>39.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p> <p>40.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4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42.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44.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 45.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46.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 47. 산업 및 건설현장 줄거리작업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48. 전북특별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49. 2036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50. 농작물재해보험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 51. 「제6차 국토·국지도 건설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제안사업 일괄예비타당성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52.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 촉구 결의안 53.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 54.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 55. 지역균형발전 영향분석 의무화 촉구 건의안 5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징계의 건	

○ 상임·특별위원회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의회운영 위원회	7. 15.(화) 9: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결정의 건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정무수석 	
기획행정 위원회	7.16.(수) 14: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 인권담당관 ○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심사(기획조정실 업무보고 후) -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7.(목) 14: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자치행정국, 대변인, 감사위원회,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 ○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심사(자치행정국 업무보고 후) -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대변인 소관 의안심사(대변인 업무보고 후)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 감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감사위원회 업무보고 후) -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의안심사(대외국제소통국 업무보고 후) -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8.(금)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의안심사(특별자치교육협력국 업무보고 후) -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21.(월)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전주대학교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농업복지 환경 위원회	7. 15.(화) 15: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산림국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 농업기술원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7.16.(수) 14: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7.17.(목) 14: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여성보건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전북여성가족재단 	
	7.18.(금)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원, 농생명축산산업국,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7.21.(월) 10:0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원 고랭지작물시험장 	
경제산업 건설 위원회	7.16.(수) 13: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유치지원실 ○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전북신용보증재단 	
	7.17.(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첨단산업국 ○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테크노파크 - 에코융합섬유연구원 - 자동차융합기술원 	
	7.18.(금)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북개발공사 - 교통문화연수원 - 새만금해양수산물 ○ 새만금해양수산물 소관 의안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7.21.(월)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정 활동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장 방문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전북테크노파크(미진부서) 	
	15:30			
문화안전 소 방 위 원 회	7. 15.(화) 15:3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간담회 ○ 조례안 심사 -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7.16.(수) 14: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도민안전실 - 소방본부 	
	7.17.(목)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문화체육관광국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 -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7.18.(금) 10: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위원회	일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교육 위원회	7.16.(수) 14:00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질의 (부교육감) ○ 2025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정책국, 대변인) 	
	16:00			
	7.17.(목) 10:0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행정국, 감사관) ○ 2025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교육국, 전북교육인권센터) 	
	14:00			
	7.18.(금) 10:0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13개 직속기관) ○ 2025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14개 교육지원청) ○ 의안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14:00			
	16:00			
	7.21.(월) 15:00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의정활동 - 무주교육지원청 	

Ⅱ. 의안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접수기관 및 의안별

제420회 (2025. 7. 25.기준)

구 분	계	조 례				규칙	규정	승인 동의	예산 결산	건의 결의	기타 의안	
		소계	제정	개정	폐지							
총 계	금 회	62	38	18	19	1	0	0	3	0	16	5
	누 계	1576	788	384	395	9	7	0	371	59	260	91
의 회	소계	금회	52	31	18	13	0	0	0	0	16	5
		누계	972	616	360	250	6	7	0	5	0	260
	의원	금회	48	28	18	10					16	4
		누계	929	601	357	239	5	0	0	0	257	71
	위원회	금회	4	3		3						1
		누계	43	15	3	11	1	7	0	5	0	3
도지사	금 회	4	3		3				1			
	누 계	458	106	15	91	0	0	0	324	24	0	4
교육감	금 회	6	4		3	1			2			
	누 계	146	66	9	54	3	0	0	42	35	0	3

2. 처리현황

○ 총 괄

제420회 (2025. 7. 25.기준)

구 분	접 수	처 리	처 리 내 용							계 류 (미료, 미심사)	
			가 결			부결	폐기	철회			
			원안	수정	대안						
총 계	금회	62	60	59	1	0	1	0	0	1	
	누계	1576	1562	1424	87	0	25	0	25	19	
조 례 안	소계	금회	38	37	36	1					1
		누계	788	781	711	45	0	6	0	17	9
	의회	금회	31	30	29	1					1
		누계	616	610	562	33	0	0	0	13	8
	도지사	금회	3	3	3						
		누계	106	106	91	8	0	3	0	4	0
	교육감	금회	4	4	4						
		누계	66	65	58	4	0	3	0	0	1
규 칙 안	금회										
	누계	7	7	7	0	0	0	0	0	0	
규 정 안	금회										
	누계	0	0							0	
승인동의안	금회	3	3	3							
	누계	370	369	319	25	0	18	0	7	1	
예산결산안	금회										
	누계	60	60	45	15	0	0	0	0	0	
건의결의안	금회	16	16	16							
	누계	260	255	252	2	0	0	0	1	9	
기 타 의 안	금회	5	4	4			1				
	누계	91	90	90	0	0	1	0	0	0	

○ 위 원 회

구 분	회 부									처 리				미 료	미 심 사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 회	40	35	0	0	3	0	0	2	39	37	1	1	0	0	1
	누 계	1233	778	0	0	363	59	24	9	1220	1076	89	25	22	0	20
의회 운영 위 원 회	금 회	1	1							1	1					
	누 계	44	20	0	0	0	0	24	0	37	31	4	0	0	0	7
기획 행정 위 원 회	금 회	8	7			1				8	8					
	누 계	234	174	0	0	59	0	0	1	232	215	10	0	6	0	4
농업 복지 경 환 위 원 회	금 회	6	6							6	6					
	누 계	220	166	0	0	54	0	0	0	220	203	2	3	11	0	1
경제 산업 건 설 위 원 회	금 회	6	6							6	6					
	누 계	298	135	0	0	160	0	0	3	298	256	22	15	3	0	2
문화 안전 소 방 위 원 회	금 회	3	3							2	2					1
	누 계	158	108	0	0	50	0	0	0	156	143	8	3	2	0	2
교 육 위 원 회	금 회	14	12			2				14	13	1				
	누 계	218	175	0	0	40	0	0	3	216	185	26	3	0	0	4
특 별 위 원 회	금 회	2							2	2	1		1			
	누 계	61	0	0	0	0	59	0	2	61	43	17	1	0	0	0

○ 본 회 의(직접부의)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24	3				16	5	24	23		1			
	누계	348	15	7	0	5	0	233	85	348	346	0	1	1	0

○ 본 회 의(의 결)

구 분	부 의								처 리				미 료	미 상 정	
	계	조 례	규 칙	규 정	승 인 동 의	예 산 결 산	건 의 결 의	기 타 의 안	계	가 결		부 결			철 회
										원 안	수* 정				
총 계	금회	61	37			3		16	5	61	59	1	1		
	누계	1506	755	8	0	344	59	249	91	1524	1416	89	14	5	0

* 위원회 수정안 가결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염영선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39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공감할 만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법인·단체에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별표·별지 등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수상자격 확대(안 제3조)
- 나. 수상후보자 추천 수정(안 제4조)
- 다. 수상자 상패 및 메달 문안 현행화(안 별표 1~안 별표 2)
- 라. 추천서 및 공적조서 현행화(안 별지 제1호서식~안 별지 제3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61호

□ 제안이유

-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공공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과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나. 교육감 등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 규정 (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라. 실행계획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안 제6조 및 안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박용근·이정린·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5. 7. 2.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45호

□ 제안이유

- 가.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환경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를 저감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나. 이에 미세플라스틱 저감정책 추진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감소시킴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환경 보호 및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마.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 및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

제 출 자	김만기 의원 (찬성의원 12명)		제 출 일 자	2025. 7. 2.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50호

□ 제안이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며, 이를 통해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환경 보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기본계획 수립을 정함(안 제5조)
- 라. 실태조사 실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7조)
- 바.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사. 업무의 위탁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아.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와 기본적 권익보호 및 신뢰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구 성)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 9명을 “제2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 (임 기) 위촉일로부터 4년(연임불가)
- (기 능)
 -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이명연·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13명)		제 출 일 자	2025. 7. 3.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46호

□ 제안이유

- 가. 농업 현장에서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대기 오염 유발 등 농업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나. 이에 영농부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의안번호 1521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7. 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36호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2030. 8. 31일 까지 연장하여 지속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변경(안 제14조)

- (기존) 2025년 8월 31일 → (변경) 2030년 8월 31일

의안번호 1522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7. 4.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37호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른 타인용 법률의 제명 개정내용 반영 및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협의회의 회의 개최 주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타인용 법률의 제명 개정내용 반영(안 제2조)
- 나. 회의개최 주기 조정(안 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지사		제 출 일 자	2025. 7. 4.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38호

□ 제안이유

- 최근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7조를 개정(‘24.1.9.)하여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기존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안전이 발생할 경우에만 구성하도록 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도록 함 (안 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7. 4.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69호

□ 제안이유

- 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 수수료 징수 관련 상위 법령 근거 명시
- 나. 응시자 편의와 부담 완화를 위해 중등 실기 부과 교과(음악, 미술, 체육) 응시 수수료 감액
- 다. 상위 법령 개정(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부령 제342호, 2024.11.8. 개정) 등에 따른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와 반환 요건 추가

□ 주요내용

- 가. 응시 수수료 징수 관련 상위법령 근거 명시(안 제1조)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관련 상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6조,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규칙 제21조) 근거 명시
- 나. 중등 실기 부과 교과(음악, 미술, 체육) 응시 수수료 감액(안 제2조)
 - 응시자 편의와 부담 완화를 위해 중등 실기 부과 교과(음악, 미술, 체육) 응시 수수료를 현행 35,000원에서 일반교과와 동일하게 25,000원으로 감액
- 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부령 제342호) 개정(2024.11.8.) 등에 따른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와 반환 요건 추가(안 제3조)
 -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추가
 - 응시 수수료 반환 요건에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반환 추가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7. 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70호

□ 제안이유

- 해당 조례는 당초 학비 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1982.3.4.) 되었으나,
- 「초·중등교육법」 제 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무상교육비에 포함되어 조례의 입법목적은 달성할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조례사후평가위원회로부터 폐지 권고, 2024.6.17.)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7. 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관계중심 생활교육 재량권 축소로 경미한 사안 및 ‘학교폭력 아님’ 으로 결정되는 심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나. 일상적인 갈등이나 경미한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관계중심 생활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계중심 생활교육(전문가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안 발생 초기에 단위학교의 관계개선 및 회복중심 생활교육 재량권 축소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척로 인해 경미한 사안 및 ‘학교폭력 아님’ 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증가함

○ 위탁기간: 2026. 1. ~ 2027. 12. (2년)

○ 사업비: 800,000천원(1년 400,000천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7. 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제안이유

- 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과 재능 발현을 위한 한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교육 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민간위탁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및 사업 확대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다문화교육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함
 - 다문화교육 지원 운영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업무 지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위탁 운영 필요
 - 사업 규모의 확대에 따라 지원 분야별로 기관을 구분하여 위탁 운영 하고자 함
- 위탁기간: 2026. 1. ~ 2027. 12. (2년)
(위탁기관 선정 이후부터 사업 종료 기한까지)
- 사업비: 2,720,000천원(매년 1,360,000천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7. 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71호

제안이유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변경(안 제2조): 4,606명 ⇒ 4,611명(5명 증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원: 4,130명 ⇒ 4,129명(1명 감원)
 - 교육전문직원 정원: 468명 ⇒ 474명(6명 증원)
- [별표 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현행			조정			증감		
	총계	본청 (직속기 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총계	본청 (직속기 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총계	본청 (직속기 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총 계	4,606			4,611			5		
정 무 직 계	1	1		1	1				
교 육 감	1	1		1	1				

기관별 직급별	현행			조정			증감		
	총계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총계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총계	본청 (직속기관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포함)
특 정 직 계 (교육전문직) 계	468			474			6		
장학관 교육연구관(4 급 상당 이상)	37	22	15	38	23	15	1	1	
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사	431			436			5		
일 반 직 계	4,117			4,116			△1		
3 급	4	4		3	3		△1	△1	
3 · 4 급	2	2		2	2				
4 급	23	22	1	23	22	1			
5급 이하 소계	4,076			4,076					
전문경력관소계	12			12					
연 구 직 계	15			15					
연 구 사 소 계	15			15					
별 정 직 계	5			5					
5급상당 이하 소계	5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교육감		제 출 일 자	2025. 7. 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72호

□ 제안이유

- 가. 조례 사후 평가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관련 법령과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명확성 제고
- 나. 위원회의 구체적 직위로 특정된 당연직 위원을 특정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수정하여 조직개편 시마다 조례 개정이 수반되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 도모

□ 주요내용

- 가. 용어 및 문장 정비(안 제5조제1호~제2호)
 - 제1호 “현장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비”
 - 제1호 및 제2호 “모든 학생” → “학생”
 - * 제1~2호 용어 형식을 통일하고,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5조에서 범위를 나타내는 용어 삭제
- 나.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4항)
 - “정책공보관, 교육혁신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과장” → “교육정책
총괄·조정 담당 부서의 장, 교육비 지원 담당 부서의 장, 현장체험학습 담당
부서의 장, 교복구입 지원 담당 부서의 장, 예산 편성·총괄 담당 부서의 장”
 - * 조직개편 시마다 조례개정이 수반되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 도모
- 다. 위원회 임기 관한 사항(안 제8조제1항)
 - “연속 재임은 4년으로 제한한다”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연임 가능 기간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수정
- 라. 위원회 간사 및 서기 직위 지정에 관한 사항(안 9조제2항)
 -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소관 업무
담당 및 담당자로 한다”
 - * 간사와 서기의 직위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7. 4.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51호

제안이유

- 지식재산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보호와 교육은 지역산업의 기술력 확보와 산업 고도화에 필수적임. 이에 지속적인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교육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종합계획의 수립에 도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4조)
- 나. 용어 정의 조문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 다.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경제부지사로 변경(안 제15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장연국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7. 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60호

제안이유

- 심각한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공무원 보육휴가 확대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결혼·출산·양육이 본격화 되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및 타 시·도(의회)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16조제4항)
 - 장기재직휴가일수를 재직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 ~ 30년 미만은 20일에서 25일로, 30년 이상은 20일에서 25일로 확대
- 나. 다자녀공무원 보육휴가 확대(안 제16조제6항)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수에 상관없이 연간 5일 보육휴가 부여→2자녀인 경우 7일, 3자녀 이상인 경우 10일로 확대
- 다. 가족행복휴가 신설(안 제16조제11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가족행복휴가 부여(5일)
- 라. 손자녀돌봄시간 신설(안 제16조제12항)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매일 2시간씩 12개월 범위 내 손자녀돌봄시간 부여
- 마. 배우자동행휴가 신설(안 제16조제13항)
 -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 시마다 난임치료시술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배우자동행휴가 부여
- 바.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안 제16조제14항)
 - 배우자가 임신·검진 시 남성공무원에게 임신·검진·동행휴가 부여(10일)
- 사. 출산 배우자 경조사별 휴가일수 확대(별표 5)
 - 10일 → 20일(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 →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최형열 의원 (찬성의원 21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40호

제안이유

- 「행정사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행정적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마을행정사 운영 목적을 규정(안 제1조)
- 나. 마을행정사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마을행정사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상담대상, 상담방법, 상담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부터 제8조까지)
- 마. 마을행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마을행정사 운영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김동구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5. 7. 16.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52호

□ 제안이유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허리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도내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중견기업 성장지원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중견기업 등의 책무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라.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 마. 중견기업 협력체계 강화 및 업무 위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전북특별자치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조례안

제 출 자	김대중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53호

□ 제안이유

- 양자과학기술 연구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양자산업 육성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전북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연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라.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및 기업 육성,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 마.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바.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 출 자	최형열 의원 (찬성의원 22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41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규제자유화의 추진)제2항에 따라, 생명경제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 정비를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 정비*
 -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 규제 등록 및 공표(안 제3조 및 제4조)
 - 규제 신설·정비 시 등록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하고, 규제사무 목록 및 변경 사항을 도민에게 공표하도록 함
- 규제 심사(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규제 신설·강화 시 계획서 작성과 규제심사를 의무화하고, 중요규제는 영향 분석서 작성 및 주민 의견 청취를 거치며, 규제철폐·개선 권고 근거를 명시함
- 규제 정비(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도지사는 매년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는 5년 이내 재검토 하며, 누구나 규제 정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 중요규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함
- 평가 및 포상(안 제22조)
 -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포상 근거 명시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염영선·김이재 의원 (찬성의원 6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42호

제안이유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활성화 방안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도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함(안 제24조)
-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화함(안 제25조)

의안번호 1537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슬지·박정규 의원 (찬성의원 11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9. 5.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4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9. 17.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9. 17.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9. 18.		공 포 번 호	제5899호

제안이유

- 도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등 사무공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사무공간 임차료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불평등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 출 자	서난이·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47호

□ 제안이유

-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및 도민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등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건강,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라. 농촌·어촌·산촌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방지와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 마. 기후교육 전문인력 양성, 기후교육 인프라 구축, 기후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의안번호 153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62호

제안이유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나. 실태조사(안 제5조)
- 다. 사업(안 제6조)
-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윤수봉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63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마음심리검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정서적 안정과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가. 기본 원칙(안 제3조)
- 나. 교육감의 책무 및 역할(안 제4조 ~ 제5조)
- 다. 마음심리검사 실시 및 운영(안 제 6조)
- 라. 검사 결과 활용 및 보호(안 제7조)
-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바. 지원 사항(안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64호

제안이유

-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다.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안 제5조)
- 라. 지도 및 감독, 실태조사(안 제6조 ~ 제7조)
- 마. 홍보 및 지원(안 제8조 ~ 제9조)
- 바. 표창 사항(안 제 10조)
-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 11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동구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54호

□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시행 ' 25.3.18.)에 따라 공공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할 경우 가산되는 금액의 범위와 인수 방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등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을 정함(안 제28조 제1항 신설)
- 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할 때의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인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성수·임승식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48호

제안이유

-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함
- 나. 저탄소 축산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다. 저탄소·친환경 축산분야의 농식품 국가인증 축산물과 농식품 국가인증·지정 농장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제5조)
- 라. 그 밖에 친환경축산업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으로 수정함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권요안·임승식·국주영은·김정수 오현숙·이정린·황영석·김슬지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49호

□ 제안이유

-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 소요예산, 대상지역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라. 시범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평가 등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마. 시범지역의 선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바. 농촌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사. 농촌기본소득 지급신청 및 확인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 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평가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 자. 시범지역에 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 차. 농촌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급금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장연국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5. 7. 15.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56호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 상황 대응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제 출 자	장연국·전용태·강태창 이명연·윤수봉·김희수 정종복·나인권·윤영숙 의원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65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올바른 국어 사용 및 국어 문화 발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공문서등의 작성 및 소속기관 명칭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라. 올바른 국어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국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 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전북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김희수 의원 (찬성의원 14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 관 위 원 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 부 일 자
	의 결 일 자	2025. 7. 15.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55호

□ 제안이유

-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 환경 조성 및 생활밀착형 홍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안전취약계층의 개념을 재규정함(안 제2조)
- 나. 예산 지원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안전 환경 지원 대상만 규정(안 제5조)
- 다. 제목 변경 및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 마련,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안 제6조) : 제목 변경(안전 환경 지원 범위 → 안전 환경 지원 범위 및 내용)
- 라. 제목 변경 및 생활밀착형 홍보와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신설(안 제8조) : 제목 변경(홍보 → 홍보 및 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이수진 의원 (찬성의원 19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43호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지역신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신문의 자립 기반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신문법의 목적인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전용태 의원 (찬성의원 20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66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법조인이며 감사원장을 역임한 한승헌 변호사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주요내용

- 가.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나.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다. 기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라.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마.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사.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박정희·진형석·한정수 의원 (찬성의원 6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67호

□ 제안이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교육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행·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제 출 자	운영숙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교육감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68호

제안이유

-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의 36.4%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 비율은 6.2%로 나타났음
- 근로권익교육이 확대됐으나 학교 교육보다 인터넷·영상 학습이 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아, 교육 내용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이에 기존 형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도교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저학년부터 지속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 부당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사용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마.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바.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사.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아. 노동인권교육 표준지침 제공, 교원 직무연수, 학생교육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 자. 사무의 위탁,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
- 차. 전담인력, 행·재정적 지원, 표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4~제16조)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이수진 의원 (찬성의원 18명)		제 출 일 자	2025. 7. 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회 부 일 자	2025. 7. 8.
	의 결 일 자	2025. 7. 1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44호

□ 제안이유

- 공정한 감사업무처리 및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 대한 직무감찰과
도의회, 감사대상 기관의 장, 감사대상기관의 부당한 처분 등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조사청구·대행·이첩을 받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감찰 및 민원조사 처리업무 신설(안 제18조의2)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희수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7.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1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15.		이 송 기 관	국회의장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매년 15,000건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법격차 해소와 국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건의하고자 함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박용근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7.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1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15.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현재 우리 농업은 초고령화, 인구감소, 농업소득 정체, 수입농산물 급증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음
- 나. 이런 상황에서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축협이 지속적인 운영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옴
- 다. 하지만 올해 말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관련 주요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항목만 12건에 달하며, 일몰 시점마다 반복되는 연장 논의는 농업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음
- 라. 이에 농촌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농민 아픔 외면하는 농업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나인권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7. 10.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1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15.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윤석열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여 전체 벼 재배면적의 11.5%를 감축하고,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농업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오히려 농가 소득의 불안정과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
- 논은 본래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특성을 지닌 토양 구조로, 발작물을 재배할 경우 과습으로 인한 생육 부진과 병해 발생 위험이 높음. 전문가와 농민들 모두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호우와 이상강우가 빈번해져 논에 타작물 재배는 생산성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벼 재배면적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는 신동진벼는 맛과 품질 면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시장 경쟁력 또한 충분히 갖춘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근거로 2027년부터 보급 중단이 예고되어 있음. 이는 전북 농민들의 주요 소득 기반을 위협하고 지역 농업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큼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현장의 실정과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농업정책을 전면 개선할 것을 주문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함

농산어촌 지역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다변화 촉구

제 출 자	전용태 의원 (찬성의원 10명)		제 출 일 자	2025. 7.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1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15.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정부는 국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나. 그러나 현재 소비쿠폰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침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산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사용 편의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다. 농산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상권 축소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고령층 주민은 인근 도시나 읍면 단위로 이동하여 물품을 구매하는데 물리적·경제적 어려움이 큼.
- 라.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등 지역 농협 경제사업장은 농촌 주민의 생필품 공급과 농산물 판로 지원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용처에서 제외된다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책 효과가 현저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에 농산어촌 지역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의 다변화를 촉구함.

의안번호 1557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출 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 출 일 자	2025. 7. 1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15.	심 의 결 과	부결
이 송 일 자	2025. 7. 15.		이 송 기 관	의장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위원 선임(안)

연번	의 원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 고
1	강 태 창	기획행정위원회	
2	김 명 지	기획행정위원회	
3	권 요 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	
4	김 정 수	농업복지환경위원회	
5	김 이 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6	임 중 명	경제산업건설위원회	
7	김 희 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8	이 명 연	문화안전소방위원회	
9	윤 정 훈	교육위원회	
10	이 수 진	기획행정위원회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 출 자	윤수봉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7. 15.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제43조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출 석 일 시 : 2025. 9. 5.(금) 14:00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5. 9. 8.(월) 10:00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9. 9.(화) 10:00 (제42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5. 9. 17.(수) 14:00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 출석대상자 :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 출석요구이유 :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등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 출 자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의장	제 출 일 자	2025. 7. 16.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2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18.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7. 18.	이 송 기 관	의장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위원 선임(안)

연번	의 원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 고
1	강 태 창	기획행정위원회	
2	김 명 지	기획행정위원회	
3	권 요 안	농업복지환경위원회	
4	김 정 수	농업복지환경위원회	
5	김 이 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6	임 종 명	경제산업건설위원회	
7	김 희 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8	이 명 연	문화안전소방위원회	
9	강 동 화	교육위원회	
10	윤 정 훈	교육위원회	
11	이 수 진	기획행정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 출 일 자	2025. 7. 1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57호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조직개편으로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이 신설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

주요내용

- 제3조제2항제5호 나목에
 (현행) 문화체육관광국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개정) 문화체육관광국·2036하계올림픽유치단 및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 출 일 자	2025. 7. 1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58호

□ 제안이유

- 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 나. 감사장 및 상장을 수여할 때는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하여 포상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제도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수정함(안 제11조)
- 나. 감사장,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다. 부당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 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 출 일 자	2025. 7. 17.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5.		이 송 기 관	도지사
공 포 일 자	2025. 8. 8.		공 포 번 호	제5859호

□ 제안이유

-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개선, 정보공개 확대, 비용지출 제한 등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다.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 심의, 심의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라. 출장경비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마. 취소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헌법의 날, 다시 국민의 휴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강동화 의원 (찬성의원 21명)		제 출 일 자	2025. 7. 21.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1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8.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서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의 기틀이 세워진 뜻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국경일로 남아있음.
- 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은 헌법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교육적·문화적 효과가 있으며, 국민이 휴식을 통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자연스럽게 체감하고, 헌법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임.
- 다. 제헌절이 단지 국기만 걸리는 날이 아니라, 온 국민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긍심을 공유하는 진정한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거듭나야 할 때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강력히 촉구함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만기·김정기·김동구·김성수 김슬지·나인권·박정희·염영선 오은미·이명연·임승식 의원		제 출 일 자	2025. 7. 22.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8.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한빛원전 1·2호기는 지난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따라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10년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 중임
- 나. 그러나 한빛원전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사고·고장 건수(810건)의 약 22.9%(186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짝퉁 베어링 납품, 5호기 화재, 2호기 황산 누출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극에 달한 상황임
- 다. 더욱이 전북특별자치도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 시설세 등 재정 지원에서도 배제되었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지원금 배분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으며, 원전 온배수로 인한 피해지역 범위도 일부 해역으로 한정되어 있음
- 라.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염영선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7.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8.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 전액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전북자치도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021년 963대에서 2025년 6월 기준 2,295대로 증가하였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총 2,465억 원에 달하며 실제 납부액만 1,765억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음.
-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예산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신규 장비 설치를 포기하거나 노후 장비 교체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이 전북도의 교통 안전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함

산업 및 건설현장 줄걸이작업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동구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7.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8.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가. 줄걸이작업은 일반적으로 단순 보조업무로 인식되어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크레인과 같은 중장비와 연동되며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작업임.

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줄걸이와 관련된 중대재해는 매년 2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 또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 이에 줄걸이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줄걸이작업 기능강습과 안전 교육 등 단계적 교육 과정을 제도화하고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법정의무교육을 도입하도록 건의하기 위함임

전북특별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이재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7. 23.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8.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수소 산업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시대에 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수송 분야에서 수소 모빌리티 중심의 친환경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임
- 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수소상용차,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등 수소 모빌리티 관련 전주기 산업 기반을 구축한 지역으로 특히, 완주군은 국내 유일의 수소상용차 생산기지인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비롯하여 수소저장용기, 수소엔진, 연료전지 제조기업 등이 밀집해 있는 수소 산업의 핵심 거점임
- 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수소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 잡힌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의 수소 특화단지 지정하도록 건의하기 위함임

2036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장연국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7.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8.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주시가 2036하계올림픽 개최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나 최종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전이 시급하여 관련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기 위함임

농작물재해보험 공공성 강화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박용근·이명연·김희수 박정규·강동화·정종복 윤수봉·김성수·최형열 의원	제 출 일 자	2025. 7.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이 송 일 자	2025. 7. 28.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가.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의 현재 운영체계는 정책보험으로서의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 나. 무엇보다 NH농협손해보험의 사실상 독점 체제로 인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혁신과 비용 효율화가 저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선택권이 제약되는 등 정책보험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 다. 농업인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정책보험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현재의 독점 운영체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 개선에만 머무르고 있음
- 라.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협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농업인과 농촌 공동체의 최후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기 위함임

「제6차 국토·국지도 건설계획」 전북특별자치도 제안사업 일괄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나인권 의원 (찬성의원 8명)		제 출 일 자	2025. 7.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8.		이 송 기 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특별자치도는 그간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 기간교통망 건설 계획에 요청한 사업 대부분이 반영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직간접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경제력지수 전국 최하위 지자체라는 경기침체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분석결과(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 하위 50위 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시·군 64.3%가 해당되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안전하고 편리한 국가도로망의 확충은 기업유치는 물론 교통편의 증진, 관광객 및 물류유통망 확보 등 침체된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가동시킬 수 있으므로 침체된 전북 지역의 회생을 위하여 도로의 확충과 정비가 시급함
- 덧붙여, 전북특별자치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도시로써 기반시설의 적극적인 구축과 정비가 절실한 상황임
- 국가균형발전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있는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6차 국토·국지도 건설계획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방소멸 가속화의 기차를 탄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안한 사업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의안번호 1571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제 출 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제 출 일 자	2025. 7.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		이 송 기 관	-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위원 선임[안]

대상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비고
	현 재	변 경	
한정수	기획행정위원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정과제 반영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국주영은·임승식·황영석 오은미·강동화·김동구 이명연·장연국·서난이 한정수·정종복·최형열 의원		제 출 일 자	2025. 7.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8.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단지 지역 요구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 및 금융산업 질적 전환을 위한 필수 과제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단순한 대통령 공약의 수준을 넘어 ‘국정과제’로 명확히 반영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농축산업을 희생양 삼는 한·미 통상 협상 전략 중단 촉구 결의안

제 출 자	이정린 의원 (찬성의원 9명)		제 출 일 자	2025. 7.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8.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가운데, 미국은 우리 정부에 자국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압박하며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쌀, 한우, 사과 등 국민 식탁과 직결된 주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곡물자급률 20%, 농가소득 연평균 1천만 원 이하, 역대 최대 농가부채, 농가경영주의 70% 이상 고령층인 현실에서 우리 농업과 농민은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도, 희생을 강요당할 수도 없으며, 특히 농축산업 비중이 높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개방 조치로 지역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는 더 이상 농축산업을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삼는 한미 통상 전략을 즉각 중단하고, 식량주권 수호라는 헌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서남이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7.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8.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지난 7월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 추진 방안이 보고되었으며, 이후 브리핑을 통해 가칭 “RE100 산업단지·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대선 공약을 통해 새만금을 풍력·태양광·조력 기반의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새만금은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단지 지정의 당위성이 분명함
- 또한, 기업이 에너지 대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지역균형발전 영향분석 의무화 촉구 건의안

제 출 자	김슬지 의원 (찬성의원 7명)		제 출 일 자	2025. 7. 24.
위원회 심사	소관위원회	본회의 직접부의	회 부 일 자	-
	의 결 일 자	-	심 사 결 과	-
본회의 심의	회 차	제3차 본회의		
	의 결 일 자	2025. 7. 25.	심 의 결 과	가결
이 송 일 자	2025. 7. 28.		이 송 기 관	대통령 등
공 포 일 자	-		공 포 번 호	-

□ 제안이유

- 참여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은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확장을 온전히 막지 못하고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음
- 전북을 포함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쇠퇴로 국가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악순화의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음
- 기존의 행정구역 중심 균형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는 5극 3특 전략이 제안되었고 현재의 정부는 이것을 공식적인 공약으로 채택·추진 예정임
- 이에 180만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균형발전 정책 대전환의 시기를 맞아 균형발전 촉진의 매개이자 기준으로 국가 예산과 정책 수립 이전에 그것이 균형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촉구 건의하는 바임

Ⅲ. 민원 접수 및 처리

1. 접수현황

○ 분야별

(2025. 7. 15.~2025. 7. 25.)

구분	계	행정	교육	사회	보건의지	환경	산업경제	문화체육관광	농축수산	교통	도시계획	건설	건축	기타
금회	8				1							1		6
2025년누계	40	1	3	6	2	2	1			1		3		21

○ 제출자별

구분	계	인원별					기관단체
		소계	1인	2인~9인	10인~99인	100인 이상	
금회	8	8	8				
2025년누계	40	40	40				

2. 처리현황

구분	계	처리별					처리중
		소계	처리	불수리	취하	타기관이송	
금회	8	8	8				
2025년누계	40	40	32		7	1	

3. 위원회별 처리현황(제12대)

(2022. 7. 1. ~ 2025. 7. 25)

구분	위원회별	접수	처리상황				비고
			계	처리	계류	반려	
전회 까지	소 계	272	272	272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4	14	14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19	19	19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14	14	14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16	16	16			
	교육위원회	72	72	72			
	기 타	137	137	137			
금회	소 계	8	8	8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1	1	1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1	1	1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1	1	1			
	교육위원회						
	기 타	5	5	5			
누계	소 계	280	280	280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14	14	14			
	농업복지환경 위원회	20	20	20			
	경제산업건설 위원회	15	15	15			
	문화안전소방 위원회	17	17	17			
	교육위원회	72	72	72			
	기 타	142	142	142			

IV.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

1. 2025년 자료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25. 7. 15. ~ 2025. 7. 25.)

기관별	구분	요구	제출	미제출	비율(%)	비고
	계	금회	51	51		100
누계		968	968		100	
전북특별 자치도	금회	39	39		100	
	누계	731	731		100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금회	12	12		100	
	누계	237	237		100	

2. 2025년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25. 7. 15. ~ 2025. 7. 25.)

기관별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계	금회	51	13	8	10	4	16	-
누계		968	225	150	188	225	148	-	32
전북특별 자치도	금회	39	11	7	9	3	9	-	-
	누계	731	199	118	159	185	47	-	23
전북특별 자치도 교육청	금회	12	2	1	1	1	7	-	-
	누계	237	26	32	29	40	101	-	9

3. 제12대 의회 의원 요구 및 제출현황(횟수별)

(2022. 7. 1. ~ 2025. 7. 25.)

구분	요구	제출	미제출	비고
합계	2,073	2,073		
전북특별자치도	1,575	1,57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498	498		

4.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횟수별)

(2022. 7. 1. ~ 2025. 7. 25.)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계	2,073	436	396	406	417	364	2	52
전북특별 자치도	1,575	383	318	357	365	113	2	37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498	53	78	49	52	251	-	15

5. 제12대 의회 위원회별 요구상황(건수별)

(2022. 7. 1. ~ 2025. 7. 25.)

구분	계	기획 행정	농업복지 환경	경제산업 건설	문화안전 소방	교육	운영	특별
합계	4,711	1,024	914	912	1,059	740	4	58
전북특별 자치도	3,720	933	749	803	972	216	4	43
전북특별 자치도교육청	991	91	165	109	87	524	-	15